

■ 수산업법 시행규칙 [별표 1]

어장기본도의 작성방법(제2조제3항 전단 관련)

1. 어장기본도에 어장의 구획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가. 이미 면허된 어장의 구획, 어업의 종류, 시설방법, 면허번호 및 어장의 면적(제곱미터로 표시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을 표시한다.
  - 나. 행정구역(읍·면·리·동)의 명칭과 어장에 인접한 특정물체의 고유명칭을 같이 표기하고, 개발하려는 어장의 해상 구역을 측량을 통하여 획정한 후 각 꼭지점의 좌표를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직각좌표의 값으로 표기한다. 이 경우 측량에 사용된 육상의 측지기준점을 도면에 같이 표기한다.
2. 기존어장과 개발하려는 어장에 대한 표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색상으로 표시하며, 기존어장의 구획선은 실선으로, 개발하려는 어장의 구획선은 점선으로 표시한다.
  - 가. 정치망어장: 홍색
  - 나. 마을어장: 자색
3. 어장 간의 거리와 어장구역의 획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가. 조수로 등을 고려하여 어장 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어업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.
  - 나. 어업별 어장구역의 획정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
    - 1) 정치망어장구역: 정치망어장은 과거의 어업실적과 영 제6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으로서 적정한지 여부 및 보호구역을 고려하여 어장을 구획해야 한다.
    - 2) 마을어장구역: 마을어장은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획하되, 어장의 수심을 미리 실측하여 어장 수심한계의 범위에서 어장을 구획해야 한다.
  - 다. 같은 수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어업에 지장이 없고, 수면의 종합적 이용이 가능하며, 어업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.